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945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문진석·정성호·서영석

이정문 • 김윤덕 • 이연희

진성준 • 안태준 • 이성윤

복기왕 • 이재관 • 강훈식

송옥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한 경우에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주정차 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 등을 정하여 허용한 장소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며, 통학용 차량이라도 안전표지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됨.

그런데, 성인에 비해 움직임이 느린 다수의 인원이 타고 내려야 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특성상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으로서 이를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으로서 이를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제32조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
지하는 장소의 특례) ①・②	지하는 장소의 특례)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으로서 이를 표
	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
	<u>동 중일 때에는 제32조제7호·</u>
	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u>수 있다.</u>